

2006년 상반기
조 사 보 고 서

(2005. 12. 1 ~ 2006. 5. 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
된 것입니다.

목 차

제1장 위원회 현황

제1절 설립 경과	3
1. 위원회 설립 배경과 의의	3
2. 위원회 설립 경과	3
제2절 조직 및 기능	4
제3절 진실규명 과제	6
제4절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 및 공개 제한	7

제2장 진실규명 신청·처리 현황

제1절 접수 현황	11
1. 유형별 접수 현황	11
2. 위원회 및 시·도별 접수 현황	13
제2절 처리 현황	15
1.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15
2. 조사개시 결정 현황	16
제3절 조사 절차와 방법	17
1. 진실규명 조사 절차	17
2. 이의신청 절차	18
3. 진실규명 조사방법	19

제3장 조사개시 결정사건 현황

- 제1절 항일독립운동 사건 23
 - 1. 영동군 황간장터 김예태의 만세 주도 23
 - 2.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24
- 제2절 해외동포사 사건 26
 - 1. 반탁운동가 19인의 소련유형(流刑) 진실규명 26
- 제3절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28
 - 1.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28
 - 2. 고양·과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29
 - 3. 단양 곡계굴 사건 31
 - 4. 문경 석달 사건 32
 - 5. 제주 첫알오름 사건 33
 - 6. 함평 11사단 사건 35
- 제4절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
 - 1. 가평 민간인희생 사건 38
 - 2. 남양주 민간인희생 사건 38
 - 3. 양평 민간인희생 사건 39
 - 4. 포천 민간인희생 사건 40
- 제5절 인권침해 사건 41
 - 1.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41
 - 2. 이수근 이중간첩 의혹 사건 44
 - 3.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46
 - 4. 신귀영일가 간첩 의혹 사건 49

제4장 평가와 계획

- 제1절 실적과 성과 55
- 제2절 문제점 및 애로사항 57
- 제3절 대책 및 향후 계획 59
- 【참고자료】 61

표 목 차

- [표 1-2-1] 위원회 인력 5
- [표 2-1-1] 진실규명 유형별 신청접수 현황 11
- [표 2-1-2] 위원회 및 시·도별 접수 현황 13
- [표 2-1-3] 위원회 및 시·도별 접수누계 비교 14
- [표 2-2-1] 진실규명 신청처리 현황 15

도 표 목 차

- [도표 2-1-1] 월별 진실규명 신청접수 추이 12

제 1 장
위원회 현황

제1절 설립 경과

1. 위원회 설립 배경과 의의

- 진실규명과 화해를 통해 민족정통성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
 - 왜곡되거나 은폐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의 조사와 진실규명
 -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
- 시민의식의 성숙 및 국가적 의지 표명
 -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하려는 시민의식의 결과
 -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원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

2. 위원회 설립 경과

- 2005. 5.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
- 2005. 12. 1. 법령 시행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 2005. 12. 22. 위원 임명 및 현판식(충무로 매경미디어빌딩 2·3층)

제2절 조직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15인(상임위원 4, 비상임위원 11)
- 위원임명 : 대통령 임명
 - 대통령 지명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국회선출 8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법원장 지명 3인
- 위원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회 활동기간

- 최초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
- 2년 이내 연장 가능(기간 만료 3월 전 대통령·국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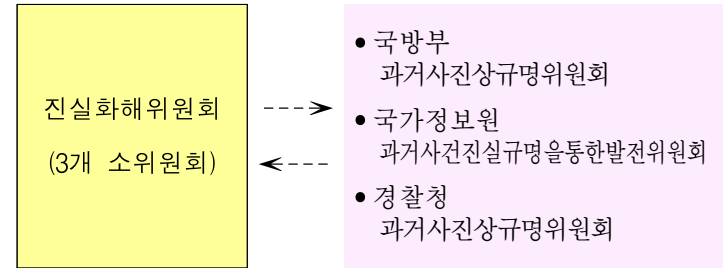
□ 위원회 특징

-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
- 위원장은 중앙관서 장의 지위를 갖고 예산업무 등 수행
-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 수행

□ 위원회 기능

-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개시 결정
- 조사의 진행,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 결정
- 화해방안 연구 등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조정



□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처, 2국, 1관, 3과·13팀(위원회 직제규칙)
- 인 력 : 187명

[표 1-2-1] 위원회 인력

계	국 가 직			자치단체 파 견	상 용 직	
	소 계	부처파견	자체채용		전문인력	사무보조
187명	120명	50명	70명	20명	20명	27명

※ 기본법 시행령상 정원은 120명(국가직)

□ '06년도 예산현황

- 예산액 : 9,410백만원
 - '06. 5. 31. 현재 1,963백만원(21%) 집행
 - 인건비 5,092백만원(54.1%), 운영비 4,318백만원(45.9%)

제3절 진실규명 과제

□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 진실규명 과제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2005. 12. 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기본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4절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 및 공개 제한

□ 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무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기본법 제32조제1항)

□ 보고서의 공개와 제한

- 보고서는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 국민화해, 민주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일부내용 비공개 (기본법 제32조제6항)
- 대통령과 국회 보고 전에 언론매체를 통한 조사대상자 및 조사 내용 공개 금지 (기본법 제31조제2항)
-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내용 공표 금지 (기본법 제32조제7항)

제 2 장

진실규명 신청 · 처리 현황

제1절 접수 현황

1. 유형별 접수 현황

[표 2-1-1] 진실규명 유형별 신청접수 현황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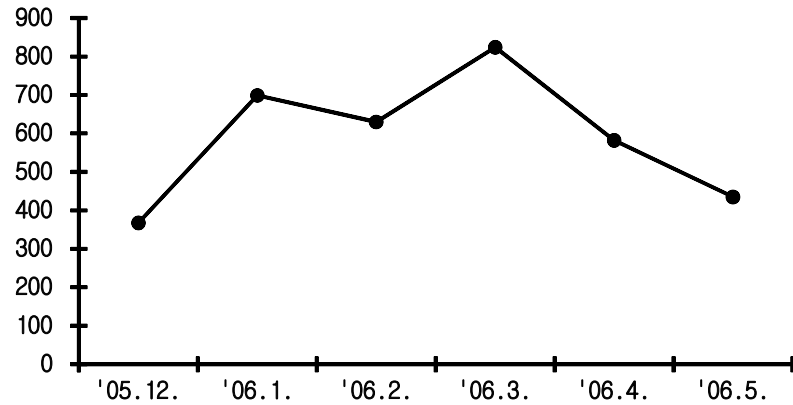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월 평균	'05년 12월	'06년 1월	'06년 2월	'06년 3월	'06년 4월	'06년 5월
계	3,537 (100.0)	589.5	367	699	630	824	582	435
항일 독립 운동	66 (1.9)	11.0	18	13	9	7	4	15
해 외 동 포 사								
민간인 집단 희생	3,042 (86.0)	507.0	200	570	590	751	536	395
적대세력 관련								
인 권 침 해	279 (7.9)	46.5	65	76	16	61	39	22
기타(비해당사건 등)	150 (4.2)	25.0	84	40	15	5	3	3

※ '06. 5. 31. 현재, 민원실 접수 기준(조사국별 재분류 이전)
타기관 이송 33건, 취하사건 230건은 별도

- '06. 5. 31. 현재 총 3,537건, 월평균 589.5건 접수
- 진실규명 범위별 월평균 접수 현황은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 507건, 인권침해 사건 46.5건,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관련 사건 11건으로,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 신청이 전체의 86.0%를 차지하여 진실규명 신청 접수 현황 증감의 주요 요인이 됨

[도표 2-1-1] 월별 진실규명 신청접수 추이

(단위 : 건)



- 위원회에 직접 접수한 30.7%를 제외하고, 시·도별 접수 현황은 전남(25.7%), 충북(9.6%), 경남(7.4%), 제주(5.4%), 경기(4.0%), 경북(3.6%), 서울(2.3%), 부산(2.2%), 전북(1.8%), 광주(1.5%), 대구(1.2%), 충남(1.1%), 대전(1.1%), 인천(1.0%), 강원(0.9%), 울산(0.5%) 순임

[표 2-1-3] 위원회 및 시·도별 접수누계 비교

접수누계	기관수	비 고
1,000건 이상	1	위원회
500~999건	1	전남
300~499건	1	충북
200~299건	1	경남
100~199건	3	경기, 경북, 제주
100건 미만	1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 '06. 5. 31. 현재

제2절 처리 현황

1.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표 2-2-1]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총 계	신 청 처 리			검토중
		계	조 사 개 시	각 하	
합 계	3,537 (100.0)	531 (15.0)	392 (11.1)	139 (3.9)	3,006 (85.0)
항 일 독 립 운 동	63	7	2	5	56
해 외 동 포 사	3	2	1	1	1
민 간 인 집 단 회 생	2,783	365	365	-	2,418
적 대 세 력 관 련	259	17	17	-	242
인 권 침 해	279	42	7	35	237
기 타 (비해당사건 등)	150	98	-	98	52

※ '06. 5. 31. 현재

- '06. 5. 31. 현재, 진실규명 신청접수 된 총 3,537건 중 531건 이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되었으며, 3,006건은 검토 중
- 신청처리된 531건 중 조사개시 결정이 392건으로 전체의 11.1%, 각하 결정이 139건으로 전체의 3.9%
- 인권침해 사건 279건에는 의문사건상규명위원회 사건 중 재 신청 사건 33건 포함

2. 조사개시 결정 현황

□ '06. 5. 31. 현재 총 17건(신청건수 392건) 조사개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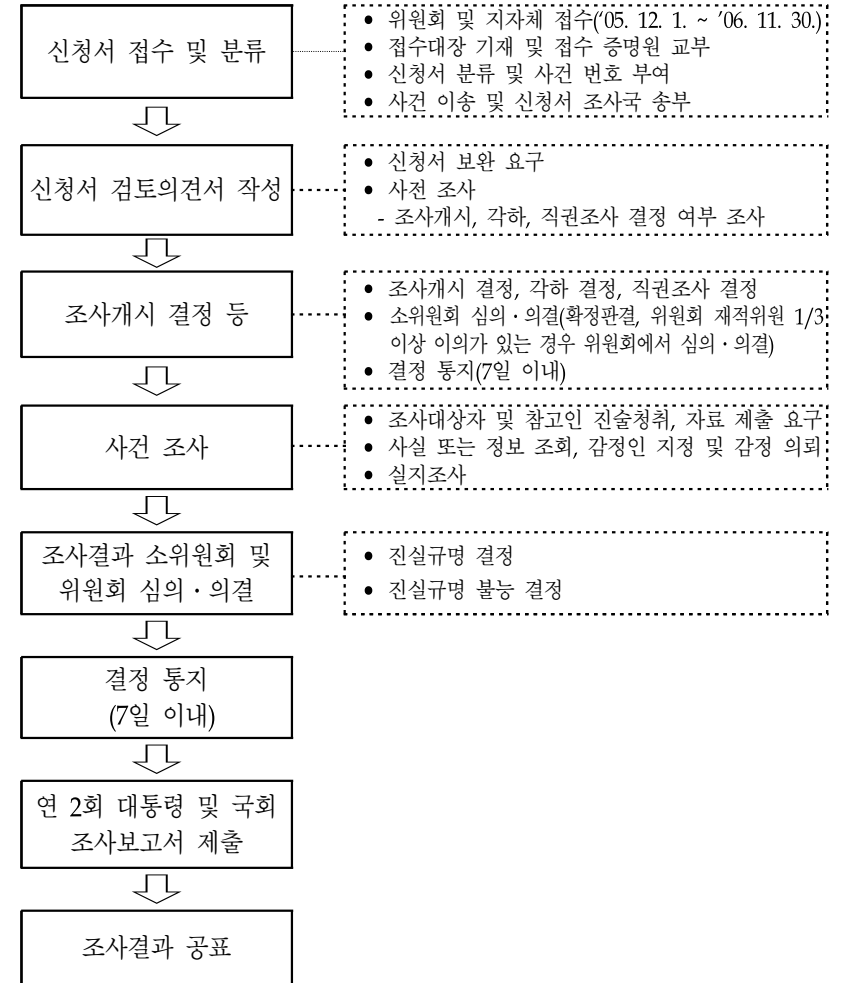
- '06. 4. 25. 영동군 황간장터 김예태의 만세 주도 등 16개 사건
 - 항일독립운동 사건 2건, 해외동포사 사건 1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6건(신청건수 36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4건(신청건수 17건), 인권침해 사건 3건
 - ※ 제15차 진실화해위원회 심의·의결 / 신청건수 388건
- '06. 5. 26. 인권침해 사건 1건(신청건수 4건)
 - ※ 제18차 진실화해위원회 심의·의결 / 신청건수 4건

□ 조사개시 결정사건의 진실규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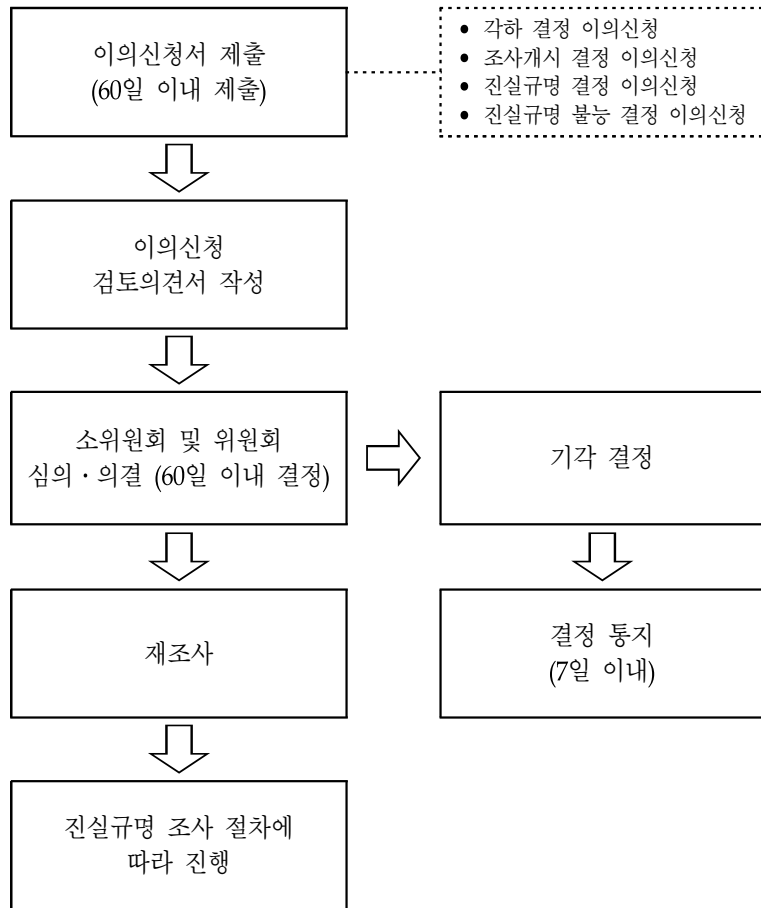
진실규명 범위	사건수	사 건 명
합 계	17건	
항 일 독 립 운 동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군 황간장터 김예태의 만세 주도 •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해 외 동 포 사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탁운동가 19인의 소련유형 진실규명
민간인집단희생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 단양 곡계굴 사건 • 문경 석달 사건 • 제주 첫알오름 사건 • 함평 11사단 사건
적 대 세 력 관 련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평 민간인희생 사건 • 남양주 민간인희생 사건 • 양평 민간인희생 사건 • 포천 민간인희생 사건
인 권 침 해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이수근 이중간첩 의혹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신귀영일가 간첩 의혹 사건

제3절 조사 절차와 방법

1. 진실규명 조사 절차



2. 이의신청 절차



3. 진실규명 조사방법

□ 근거

- 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7조,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및 영치
-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 조회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회
- 진실규명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실지조사
- 진실규명 조사에 필요할 경우 국내·외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사 참여 또는 공청회 개최로 의견 청취
- 자료 조사 및 수집
 - 국내·외 기관과 협력, 위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 파견

제 3 장

조사개시 결정사건 현황

제1절 항일독립운동 사건

1. 영동군 황간장터 김예태의 만세 주도

□ 사건 개요

- 이칠만옹(당 84세, 황간면 마산리 거주)과 김예태의 사촌조카인 김영옥(당 54세, 황간면 남성리 거주)의 증언에 의하면,
- 1919년 3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장터에서 대규모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고, 군복차림을 한 김예태가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주창하였으며, 일본 헌병이 김예태를 붙잡아 옷을 벗긴 뒤 포승한 채 잡아갔다고 함
 - 구체적 자료는 없으나 선친 등 증언자들에 의하면 김예태가 주동하였다고 함

□ 진실규명 과제

-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충북 영동군 황간장터에서의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는지 여부
- 황간장터 만세운동과 황간 청년운동에 김예태의 참여 및 관련성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그동안 문헌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김예태를 중심으로 한 황간면, 나아가 영동군 지방의 항일독립운동을 새롭게 진실규명 함으로써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보다 총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우리 항일독립운동사는 중앙 중심 또는 지도부 위주로 연구·서술되어 각 지역에서 펼쳐진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묻히거나 중요한 사실이 간과된 경우가 많았는데, 항일독립운동의 전체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2.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 사건 개요

- 신청인의 조부 김진수(金鎭水)는 중국에서 신홍무관학교를 나와서 항일독립운동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규명해 달라는 내용이며, 다음 증거자료를 제출
- 증거자료에 의하면, 김진수는 1922년 10월 영어 연구를 명목으로 중국 광둥성으로 도향했고, 1928년 8월경 하얼빈(哈爾濱) 도외십사도외(道外十四道外) 정주해(鄭周海) 집으로 이전
- 조선총독부경무국(朝鮮總督府警務局)에서 1934년 발간한 『국외에서 용의조선인명부(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에 이명 김철(金鋏), 해성(海星)으로 나옴
- 정읍경찰서 태인주재소에서 입수한 「'항일사상자' 요시찰인물(제557호)」에는 김진수의 변명(變名)이 김철(金鐵)로 나옴

□ 진실규명 과제

- 김진수가 중국에서 신홍무관학교를 졸업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 여부

- 김진수의 변명이 김철(金鋏), 김철(金鐵), 해성, 김준(金濬)이었는지, 또 이들이 동일인이었는지 여부
- 김철(金鐵)이 김진수의 변명일 경우, 김철이 신홍무관학교, 한족회, 임시정부육군무관학교, 국민대표회의 대표, 서로군정서 및 정의부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는지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주요 단체·조직의 강령·정책·노선 등에 치우친 그동안 중국지역 항일독립운동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개인사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중국지역 항일독립운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많은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개인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독립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런 개인들의 항일독립운동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제2절 해외동포사 사건

존자들에게 대한 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 방안 제시

1. 반탁운동가 19인의 소련유형(流刑) 진실규명

□ 사건 개요

- 신청인에 의하면, 신경득(申京得) 외 4명은 1945년 12월부터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반탁운동에 앞장서던 중 1946년 1월 소련군(신청인 주장)에게 강제연행
- 소련군 점령지역(현재의 철원일부 및 북한지역)에서 연행된 다른 반탁운동가 18명과 함께 평양형무소 등에서 약 1년간 복역하다가 구(舊)소련지역의 강제수용소에 분산수용
- 그 후 약 5년간 강제노역에 투입되었다가 신청인의 부친을 포함한 일부는 수용생활 중 사망하고, 생존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서 거주하다가, 1990년 한·소 수교를 계기로 생존자 중 일부가 한국으로 귀환

□ 진실규명 과제

- 1945년 말부터 전국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이하 '반탁운동') 중 북한지역에서의 반탁운동에 대한 사실 규명
- 북한지역 반탁운동에 참여하여 연행되었던 조선인들 중,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압송되어 수감생활과 강제노역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조사
-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여 정착한 생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19세기 말부터 해방 전후까지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가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 사건 관계자들은 구소련지역 재외동포 가운데 또 하나의 유형임
- 이 신청사건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으로 구소련지역의 재외동포사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사건으로 조사할 필요 있음

제3절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 사건 개요

- 1950년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대구·경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재소자 등이 경북 경산시 평산동 폐코발트광산 지하갱도와 인근 대원골에서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
- 사건 관련 유족회와 자료에 따르면, 대구형무소 재소자 2,574명 중 대부분이 폐광산에서 희생되었다고 함
- 국민보도연맹원 희생규모는 경산 400여명, 청도 400여명, 영천 등 200여명이고, 대구형무소 재소자 중 일부도 전쟁 직후 다른 형무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목격자에 의하면, 재소자들은 포승줄로 묶인 채 군용트럭에 실려와 수직갱도 입구에 나란히 세워진 뒤 총살 또는 산 채로 매장되었다고 함
-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예비검속 조치 하에서 자발적으로 경찰서로 가거나 집에서 경찰들에게 끌려가 경찰서, 담배창고, 수리조합창고 등에 구금된 후 광산으로 이동, 희생되었고
- 방첩대(CIC)에 끌려온 사람들은 광산입구 경산파견대에서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된 후 D등급을 제외한 대부분이 희생되었다고 함

□ 진실규명 과제

-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와 신원
- 방첩대(CIC)·경찰 등 정보관련 기관의 개입 여부
-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여부
- 국민보도연맹원 희생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대구형무소 재소자 및 경산, 청도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수 천명이 희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
- 광산의 수평갱도 2개소와 대원골 골짜기에 유골 수백구가 원형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처리 대책 필요
- 현재 폐코발트광산지역의 집단희생지는 보존되어 있으나 인근 골프장 건설로 현장훼손의 우려가 있어 시급한 조사 필요

2.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 사건 개요

- 1950. 9. 28. 서울수복을 전후하여 고양과 파주지역의 주민 1,000여명이 인민군 협력 혐의를 이유로 경찰·치안대 등에 의해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 덕이동 새벽구덩이, 덕양구 현천동 뒷산, 파주 교하면 황매동 갯벌, 문발리 등에서 희생된 사건으로 추정됨
- 신청인에 따르면, 고양지역 경찰·치안대는 수복 직후부터 태극단 등 우익단체원들이 인민군 협력자로 지목한 주민

들을 연행, 중산창고, 현천리 창고 등 각 마을 창고에 수감하고, 일부는 총살하거나 일부는 고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겼다고 함

- 유족들은 당시 연행된 주민들이 인민군 협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금정굴로 끌려가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건 발생 한 달 후 '군경합동수사본부'가 사건을 조사하면서, 치안대장을 비롯한 경찰관 등 1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무영 고양경찰서장은 체포를 피해 도망갔다고 함

□ 진실규명 과제

- 경찰 등 국가기구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상 여부 및 치안대 등 준군사조직의 집단처형 책임규명
-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금정굴 사건의 관련성 여부
- 고양경찰서 '진명부(유치인 명부)' 등 관련자료의 확보를 통한 희생자 규모 파악
- 민간인희생 날짜의 확인
- 재산수탈 등 생명박탈 이외의 피해 실태와 규모 확인
- 인민군 협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공식적인 재판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대표적인 인민군 협력혐의자 희생사건으로 피해자 규모가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 관련유족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진실규명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인지도가 높아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3. 단양 곡계굴 사건

□ 사건 개요

- 1951. 1. 20. 10:00경 단양 영춘면 상리소재 곡계굴을 미군 비행기가 폭격하고, 이어 상2리마을, 용진리마을, 보바리마을 등 주변지역을 폭격하여 가옥이 전소되고 곡계굴의 피난민 360여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추정됨
- 신청인에 따르면, 곡계굴은 총 길이 300미터, 높이 2~3미터 정도의 자연굴로 안쪽에 연못이 있어 피난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여, 단양 영춘면 등지의 피난민들이 전쟁 발발 직후 피신해 있었다고 함

□ 진실규명 과제

- 단양 곡계굴 등에서 사망한 민간인의 규모와 신원 확인
- 미공군기의 실제 폭격 여부 및 그 배경
- 미군의 네이팜탄 사용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신청인에 의하면, 피해규모가 노근리 사건 이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되며, 어린 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족과 증언자들이 연

로하여 진실규명이 필요

-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네이팜탄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되며, 피해에 대한 미군의 책임 및 네이팜탄의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4. 문경 석달 사건

□ 사건 개요

- 1949. 12. 24.(음력 11. 5.) 12:00~16:00 경 사이에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 제2대대(혹은 3대대) 2소대 및 3소대 병력 60~100명이 석달마을에 이르러 불을 지르고, 주민 86명을 마을 앞 논과 동편 산자락에서 집단희생시킨 사건으로 추정됨
- 신청인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마을에는 24가구 127명이 거주하였는데, 무장군인들이 민간인 안내원 2명을 앞세워 석달마을에 도착하여 주민들을 집에서 소개시켰다고 함
- 소개된 주민들은 마을 앞 논에서, 뒤이어 귀가하던 학생과 청년들은 마을 동편 산중턱에서 군인들에 의해 각각 희생되었다고 함
- 이후 군인들은 갈평리(혹은 충북 제천군 한수면 동창리 : 현재는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2리)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진실규명 과제

- 가해혐의자가 국군인지 여부
 -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와 맥아더기념관에서 최근 공개·

입수된 자료들에서는 사건의 주체가 “한국군(Korean Army)”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까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정부·국군·경찰 당국이 사건을 은폐·조작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규모와 신원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1960. 6. 3. 국회조사반 주병환·윤용구 의원이 현지 방문하여 생존유족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나 현재까지 국가기관에 의한 사건조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음
- 1960년 5·16 이후, 유족이 제출한 호소문을 포고령 제18호 위반(반국가 행위)으로 규정, 관련유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하는 등 유족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탄압이 있었음
- 미국자료에서 가해혐의 군인들의 소속부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으나 관계기관은 전사자료 등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불가라고 유족들에게 통보하여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

5. 제주 첫알오름 사건

□ 사건 개요

- 1950. 8. 20.(음력 7. 7.) 모슬포경찰서 관내(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이 군(모슬포 주둔 해병 제3대대, 대대장 김윤근 소령)에 송치되어,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리 소재 속칭 ‘첫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

이던 굴속에서 집단희생 된 사건으로 추정됨

- 1950. 6. 25. 내무부 치안국이 제주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관련 인물들의 예비검속 조치 시행
- 1950. 6. 30. 치안국에서 제주경찰국에 '불순분자 구속 처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관련인물들을 구속
- 이어 1950. 7~8월 초 모슬포경찰서 관내 주민 344명을 예비검속하여 모슬포 절간 고구마창고, 한림 어업조합창고 등에 수용했다고 함
- 1950. 8. 20. 예비검속자 195명(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이 송악산 첫알오름 탄약고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

□ 진실규명 과제

- 피해일시 확인(예비검속일, 검속기간, 희생일시)
- 사건당일 희생자의 연행과 수감장소, 이동경로, 희생장소
- 피해원인 규명, 예비검속 이유, 희생대상자 선별기준
- 정확한 희생자 규모
- 가해혐의자의 지휘 명령체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가해혐의자의 실제 책임 문제
- 해방 후 폐지된 예비검속 제도의 존속 여부 및 불법성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사건관련 생존유족이 많고 오랫동안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

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사건의 규모가 커서 전쟁직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음
- 내무부 치안국의 예비검속 지침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되어 국민보도연맹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확인 필요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6. 함평 11사단 사건

□ 사건 개요

- 1950. 12. 6. ~ 1951. 1. 14. 사이에 불갑산 지역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5중대에 의해 함평의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인근 마을의 가옥이 소실되고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추정됨
- 1950. 7. 23. 함평 지역은 인민군 점령으로 국군이 후퇴하였고, 이후 인민군은 지역의 잔존 좌익세력과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민공화국 체제가 3개월간 지속됨
- 국군 11사단 예하 3개 연대는 지리산전투사령부(9연대), 전북지구전투사령부(13연대), 전남지구전투사령부(20연대)로 각각 호칭을 바꾸어 지리산과 그 주변 산악지대에서 빨치산 소탕을 전담하였음
- 1950. 9. 15. 유엔군의 인천상륙 후, 빨치산과 잔류 인민군

이 불갑산, 태청산을 중심으로 국군과 대치하며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교전상태였음

- 1950. 10. 23. 국군 11사단 20연대가 함평을 수복함
- 1950. 12. 2. 20연대 2대대 5중대원들이 순찰하던 중 월야면 계림리 시목마을 앞 지하보(일명 한새들) 부근에서 빨치산과 전투가 벌어져 국군 2명이 전사함
- 국군 전사 이후 1950. 12. 6. 새벽 월야면 장교·동촌마을을 시작으로 1951. 1. 14. 나산면 우치리 소재마을에 이르기까지 불갑산 지역의 작전과정에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중대장 권준옥)에 의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진실규명 과제

- 민간인 집단희생의 국군책임 여부, 함평군 내에서 좌익 및 빨치산의 활동여부, 국군의 마을진입 여부
- 1960년 제4대 국회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희생자 524명과 함평 11사단 사건 신청인과의 관련성 및 피해규모 확인
- 1950. 10. 23. 11사단 20연대의 작전명령과 민간인 집단희생과의 연관성 여부
- 희생자·가옥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국군의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되지만, 다수의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

- 제2전선 지역에서 국군의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추정되므로 당시 군 작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 1960년대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되었으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의 탄원과 민원 신청 등이 계속되고 있음
- 11사단에 의해 발생한 거창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국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 군인들 중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할 때, 함평 사건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

제4절 적대세력 관련 사건

1. 가평 민간인희생 사건

□ 사건 개요

- 1950. 9. 28 서울수복 이후 고립상태에 있던 인민군이 후퇴하던 과정에서 공무원·군·경을 연행하여 1950. 9. 30. 가평 마장리 계곡에서 총살한 사건으로 추정됨

□ 진실규명 과제

- 희생자 연행이유와 희생장소 확인
- 가해혐의자의 소속과 실제 확인 필요
- 인민군 이동경로와 희생 장소와의 관계 파악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1950. 9. 28 서울수복 전후 인민군 후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가평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의 실태 파악에 필요
- 사건조사에 필요한 유족과 목격자의 증언이 있음

2. 남양주 민간인희생 사건

□ 사건 개요

-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이후 후퇴하던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해 1950. 9. 26. 남양주군 호계읍 마치터널 계곡에서

관내 다른 마을 주민을 포함하여 27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추정됨

□ 진실규명 과제

- 구체적인 희생장소와 피해규모 확인
- 희생자 신원
- 가해혐의자가 인민군인지 지방좌익인지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유족과 목격자의 증언 청취가 가능하며, 서울수복 전후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의 실태 파악 필요
- 유족들이 희생장소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유해파악(발굴)이 가능

3. 양평 민간인희생 사건

□ 사건 개요

- 1950. 9. 22. ~ 9. 28.까지 7일 동안 양평읍 한강변(일명 떠드령산)에서 양평지역 공무원, 군경가족, 청년단원 등이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으로 추정됨

□ 진실규명 과제

- 구체적인 희생장소와 피해규모 확인
- 희생 이유와 희생과정의 불법성 여부
- 가해혐의자가 인민군인지 지방좌익인지 여부

제5절 인권침해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경기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중 피해 규모가 큰 사건으로 지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임
- 9·28 서울수복을 전후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한국전쟁 시기 좌우대립에 따른 민간인희생 사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증언자 및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며, 희생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

4. 포천 민간인희생 사건

□ 사건 개요

- 1950. 9·28 서울수복 직전 우익활동을 이유로 공무원 등이 인민군에게 끌려가 포천초등학교 뒷산에서 희생당한 사건으로 추정됨

□ 진실규명 과제

- 희생자 전체규모와 신원파악
- 피해이유와 가해혐의자의 소속과 실제 규명
- 사건발생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민군과 동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9·28 서울수복 이후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포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의 실태 파악에 중요
- 유족과 관련 참고인이 생존해 있고, 증언 확보도 가능함

1.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사건 개요

-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는 6·25 전쟁 당시 도일하여 재일(在日) 거류민단 간부로 활동하다 4·19 직후 귀국,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하게 되자 1961. 2.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 당시 혁신계 인물들이 주장하던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 민족 자주통일 등 진보적 논지를 중점 보도해 오던 중
- 5·16 직후인 1961. 5. 18. “간첩혐의자 이영근으로부터 조총련계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검·경합수부에 연행된 후 「민족일보」는 폐간조치를 당하고
 - 같은 해 6. 22. 소급입법으로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혁명재판소로부터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로서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라면서 사형을 선고 받고 32세 나이로 처형되자
- 당시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내외 언론인들이 구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5·16 세력이 조용수를 희생양으로 처단하였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조용수의 동생이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임

□ 의혹 사항

-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 「민족일보」가 당시 혁신계 인물들의 주장내용을 주로 보도하여 발행부수가 주요 신문에 근접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자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5·16 세력이 '남북협상을 통한 민족 자주통일 방안'에 대한 보도내용 등을 문제 삼아 처벌한 것은 5·16 세력의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 재일 민단체 인물 이영근을 조총련계 간첩으로 둔갑
 - 재일 이영근은 민단체로 활동하면서 1990. 5.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추서받은 자로, 이영근을 조총련계 간첩으로 둔갑시켜 「민족일보」 설립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는 의혹
- 조용수를 정당의 주요간부로 조작
 - 조용수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주요간부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 조용수는 1960. 7. 29. 민의원 선거시 「사회대중당」의 공천으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 후 사회대중당은 분당되어 1961. 2. 「민족일보」 설립시부터는 정당 간부로 활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로 조작하여 처벌한 의혹

□ 진실규명 과제

- 5·16 직후 조용수 연행 및 「민족일보」 폐간 경위 등을 확인하여 5·16 세력의 표적수사 의혹 규명
- 조총련계 간첩이라는 이영근이 일본에서 민단체 또는 조총련계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활동사항 및 신원을 규명
- 1990. 5. 사망한 이영근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훈장을 추서한 경위
- 조용수가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민족일보」를 설립했는지 여부
- 조용수가 1960. 2. 「민족일보」 설립 이후에도 「사회대중당」 간부로 계속 활동했는지 여부
- 「민족일보」 기사내용 중 북한을 고무 동조한 내용 유무 및 당시 주요 신문과 논조 비교
- 조용수에 대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 데 대해 법리상 오류 여부 등 규명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재심사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재심사유에 해당
-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하여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5·16 세력은 조용수를 희생양으로 처단하기 위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처형하고

- 「민족일보」 보도내용이 평화통일과 남북협상 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폐간 조치하는 등 언론 탄압과 동시에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어 진실규명이 필요함

2. 이수근 이중간첩 의혹 사건

□ 사건 개요

- 1967. 3. 22. 당시 북한 조선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여 결혼도 하고 반공강연을 하면서 국내 정착 중 1969. 1. 27. 위조여권을 이용해 변장 상태로 조카 배경옥과 함께 홍콩으로 탈출, 제3국행을 기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 강제 송환되어
 - 1969. 7. 2. 이수근은 간첩죄로 사형, 동행한 조카 배경옥은 간첩방조죄로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임
- 탈출시 동행한 이수근의 조카 배경옥은 ‘이수근이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에서 살기 위해 단순 탈출한 사건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였고, 자신은 고문에 의해 간첩 방조죄로 조작되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 2005. 7.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한 데 이어 2005. 12.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함

□ 의혹 사항

- 중앙정보부에서 이수근을 이중간첩으로 조작
 - 이수근은 중앙정보부 조사과정에서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따

라 위장귀순하여 1968. 5. 경 조카 배경옥을 통해 북한에 암호문을 발송한 후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탈출한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되었으나

- 「월간조선」, 「신동아」, 「조선일보」, 「MBC-TV」 등 각종 언론에서 사건 당시 근무한 중앙정보부 간부들의 발언을 근거로 이수근의 이중간첩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

○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

- 이수근 탈출시 동행한 배경옥은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여 이수근은 간첩으로, 자신은 간첩방조자로 조작되었다고 주장

□ 진실규명 과제

- 이수근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1967. 3. 판문점을 통해 위장귀순하였는지 여부
- 이수근이 국내 체류 중 1968. 5. 배경옥을 통해 북한에 암호문을 발송한 사실 여부
- 이수근이 1969. 1.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홍콩으로 탈출한 경위
-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사건 조작 여부 등 규명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재심사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재심사유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
- 이수근 사건 당시 근무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언론에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언동한 바 있고
- 「월간조선」, 「신동아」 등 각종 언론에서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수근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간첩방조죄로 21년간 복역한 배경옥은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허위진술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 고문에 의한 사건조작으로 생명권 박탈 및 장기간 수형, 고문 후유증 및 가족관계 해체 등 침해결과가 중대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함

3.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 사건 개요

- 1991. 5. 8.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 :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유서 2매를 남기고 분신 후 투신자살하자
- 검찰에서는 분신자살의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당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김기설의 하숙방 등지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에 대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1991. 6. 24.부터 구속 수사, 기소하여 대법원에서 자살방조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 한편, 당시 언론에서 검찰 수사에 대하여 필적감정 조작 또는 표적수사라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못하여 중단하자, 강기훈이 우리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함

□ 의혹 사항

- 검찰의 외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필적감정을 조작
 - 검찰에서는 1991. 5. 10. ~ 7. 24. 13회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관련자료를 필적감정 의뢰하여 1차로 '유서와 「전민련」 업무일지의 글씨는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문서는 이동(異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은 후
 - 2차로 '강기훈이 1985년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시 작성한 자필진술서와 유서가 같은 필적'이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 강기훈의 변호인과 언론에서는 강기훈의 자필진술서와 유서는 육안으로 보아도 글씨체가 다르다면서 필적감정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 사건 담당검사가 감정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하였으며, 필적감정 담당자가 검사에게 "어떤 감정결과를 원하는냐"라고 전화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 감정인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허위감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어 검찰의 압력으로 필적감정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대상 표적수사

- 검찰에서는 김기설이 분신자살한 1991. 5. 8. 당일 김기설의 당시 주소지인 안양시 호계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분실신고서'를 임의 제출받은 후 작성한 압수조서에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라고 기록하였고
- 공소장에 강기훈의 유서대필 일시 및 장소, 대필방법 등 혐의사실의 기본요건을 특정시키지 못한 상태로 기소한 점 등으로 보아
-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강기훈을 자살방조자로 지목하고 표적수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진실규명 과제

- 김기설 투신 당시 발견된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과 동일 여부
- 검찰이 강기훈에 대한 표적수사 여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필적감정 조작 여부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재심사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재심사유에 해당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의 사건수사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검찰의 외압으로 필적감정이 조작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되었고
- 동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검찰

의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이 짙다'라면서 진상규명을 못하였으나

- 강기훈에 대한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진실규명이 필요함

4. 신귀영 일가 간첩 의혹 사건

□ 사건 개요

- 신귀영 등 일가 4명은 원양어선 선원으로 1965년경부터 선박이 일본에 기항하면 형 신수영 등 일본에 거주 중인 친척을 접촉해 오던 중
- 신귀영 등 일가 4명이 1980년 2~3월간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40~70여일간 조사를 받고
- 조총련 간부 신수영의 지령에 따라 부산지역 군부대 현황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간첩혐의자로 구속기소되어 1980. 10. 부산지법에서 징역 5~15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 이들 가족들은 장기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하게 되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 1994. 2., 2001. 8. 등 2회에 걸쳐 재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자 우리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함

□ 의혹 사항

- 신귀영 등은 장기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하여 간첩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

- 재일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라는 사실 확인도 없이 신귀영의 자백만으로 신수영을 간첩 상부선으로 확정하는 등 수사 미흡
- 공소사실 중 간첩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점 및 노선버스 등이 등장하는 등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

□ 진실규명 과제

-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에 의한 사건조작 여부 확인
 - 신귀영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장기 구금상태에서 강압 수사 여부
 - 사건 수사 참여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법 수사 여부 등 확인
- 수사기록 및 증거의 모순점 조사
 - 재일 신수영에 대하여 75. 6. 중앙정보부 발행 조총련 인물록에 조총련 간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총련계 간첩으로 의율 가능 여부 확인
 - 간첩 활동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서점 및 노선버스 등이 등장한 경위 등 수사기록상 모순점 규명
 - 신수영 등의 간첩활동 혐의에 대해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한 경위 등 규명

□ 조사개시 결정 이유

- 재심사유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재심사유에 해당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재심사유에 해당

- 신귀영 가족들은 장기 불법감금, 고문 등을 통한 허위자백 및 허위증언으로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이므로 신청인들의 인권침해 구제 및 명예회복,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함

제 4 장

평가와 계획

제1절 실적 및 성과

□ 위원회 활동의 기초자원 확보 및 기반 조성

- 체계적·효율적 조사활동을 위한 법규 정비 및 인력 충원
- 진실규명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조사 및 수집 활동 개시

□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국민 일반의 관심 및 호의 증대

- 홈페이지 개설,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신청 독려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국민 일반의 관심 및 인지도 증대
- 위원장 및 위원들의 방송 인터뷰, 대담 출연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론 확대

□ 능동적 현장활동으로 지역 단위의 호응 및 참여 유도

- 위원장 및 위원들이 조사대상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설명회 등 개최
-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언론의 관심 증대와 과거사 진실규명의 의의 재인식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증진

- 국가기관이 자체 설치한 과거사 관련 특별기구 위원장 및 진실규명 관계기관장과의 간담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접수 업무 담당자 간담회, 시·도별 간담회,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순차적 실시

□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의 기초 확립

- 위원회 설립으로 과거사 관련 불필요한 논란의 종결과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위원회 활동의 개시로 현대사에 대한 총체적 정리 및 진실 규명과 화해의 초석 마련

제2절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조사인력 부족

- 2006. 5. 31 현재 신청건수 3,537건(월평균 589.5건)과 신청기한 일까지의 추가신청건수를 감안할 시, 현재의 조사업무 인원은 매우 부족하여 사건 처리에 난항 예상
- 신청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하였고 관련 자료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어, 신청 내용 확인 등 자료조사에 많은 시간 소요

□ 제도 미비 및 예산 부족

- 진실규명과 피해자·유족의 해원을 위해 요구되는 유해 발굴 등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 미비
- 충실한 조사활동의 필수요건인 조사장비 구입, 자료 조사 및 자료DB 구축을 위한 예산 미배정

□ 호응도의 지역별 편차와 해외접수처 미설치

- 위원회(1,087건), 전남(909건), 충북(340건), 경남(263건)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신청접수 실적 부진(각 200건 미만)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접수 절차 부재와 국외홍보 부족으로 해외동포사 관련 신청 건수 극소(3건)

제3절 대책 및 향후 계획

□ 뿌리 깊은 피해의식과 사실관계 왜곡 보도

-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 관련 유족들의 피해의식 등으로 인한 진실규명 신청 기피 분위기 잔존
- 위원회에 대한 일부 언론 등의 사실관계 왜곡 보도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저해

□ 조사활동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 조속 강구

- 진실규명을 위한 유해발굴, 자료조사, 현지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 마련
- 기 충원된 인력의 업무 조정 및 재배치 등으로 전반적 업무 효율성 제고 도모

□ 국가기관 및 재외공관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

- 국가기관이 자체 설치한 과거사 관련 특별기구들과의 업무협조·조정 기능 활성화
- 재외공관을 통한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신청접수 등, 업무협조망 다변화 방안 도입

□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강화 및 위임사무 처리 지원

- 위원회 주관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에서 조사장소 제공 및 인력 지원 등 업무협조체계 강화
- 지자체에 진실규명 신청접수·홍보·기초조사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국비예산 지원 방안 모색

□ 체계적인 자료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진실규명의 기초가 될 현대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조사·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할 기록과 자료를 추후 사료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자료DB 구축

참 고 자 료

-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검증 장치로서 유해발굴 정책 마련**
 -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검증을 뒷받침할 유해발굴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유해발굴 등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 **피해의식 해소와 왜곡보도 시정을 위한 홍보·교섭 활동 강화**
 -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청기피 문제 해결
 - 위원회 활동 관련 사실관계의 왜곡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함과 동시에 대언론 통로 확충
-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국·내외 전문가의 조사 참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역 순회 간담회, 현지설명회 개최 등으로 국민적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 **피해자 구제 및 화해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위령사업 등 한국 상황에 적합한 피해자 구제 및 화해조치 모델의 연구 개발
 -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기획 등 과거사 재단 관련 로드맵 작성

1. 위원회 위원 명단	63
2. 위원회 사무처 간부 명단	64
3. 위원회 기구표	65
4. 위원회 법령	66

위원회 위원 명단

('06. 5. 31. 현재)

구 분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송 기 인	67	○ 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 신부
상임위원 (3명)	김 갑 배	53	○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 변호사
	김 동 춘	47	○ 전 참여연대정책위원장 ○ 성공회대 교수
	이 영 조	50	○ 전 (사)시장경제연구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경희대 교수
위 원 (10명)	강 정 혜	42	○ 전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서울시립대 교수
	김 경 남	5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 목사
	김 영 범	50	○ 국무총리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위원 ○ 대구대 교수
	김 영 택	69	○ 전 한국역사기록연구소장 및 이사장 ○ 국민대 겸임교수
	박 준 선	4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권위원 ○ 변호사
	신 광 수 (법 타)	60	○ 일연학연구원 이사장 ○ 은혜사 주지
	안 병 욱	57	○ 국정원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 ○ 가톨릭대 교수
	오 진 환	47	○ 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 변호사
	정 병 석	47	○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전남대 교수
	최 일 숙	4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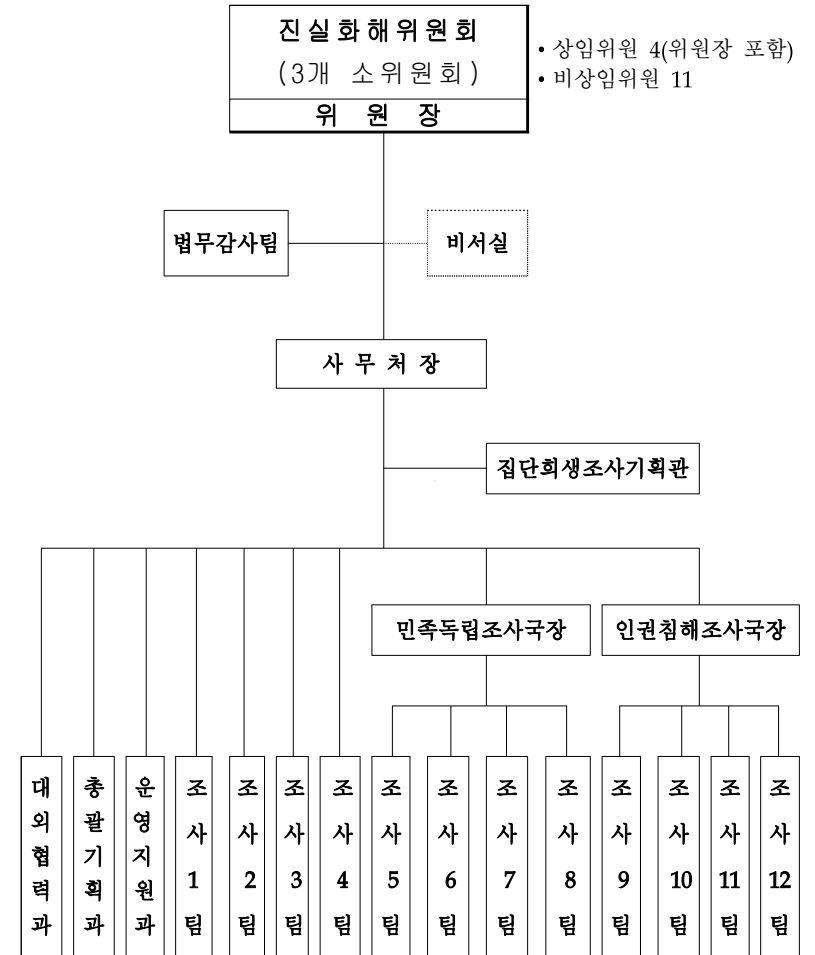
* '06. 5. 31. 현재 결원 1인(한나라 추천 1)

위원회 사무처 간부 명단

(4급상당 이상, '06. 5. 31. 현재)

직위(직급)	성명	연령	주요경력
사무처장 (1급상당)	설동일	49	○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의장 ○ 부산 민주공원 관장
민족독립조사국장 (이사관)	고윤환	49	○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 제주4·3지원단장
인권침해조사국장 (3급상당)	이명춘	47	○ 법무법인 청솔 변호사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이사
집단희생조사기획관 (3급상당)	이영일	46	○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 기획실장
대외협력과장 (4급상당)	유한범	38	○ 의문사진상규명위 대외협력 홍보팀장 ○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총괄기획과장 (서기관)	문태선	49	○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경제조정관실(산업심의관실)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한용각	54	○ 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실, 자치행정팀
조사1팀장 (4급상당)	김무용	45	○ 고려대 한국사학과 강사 ○ 역사학연구소 부소장
조사5팀장 (4급상당)	박철규	44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부장 ○ 경성대 초빙외래교수
조사9팀장 (검찰수사서기관)	박성순	54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제주지검 사건과장
조사11팀장 (4급상당)	김학철	47	○ 의문사진상규명위 특별조사과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조사단장

위원회 기구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2005. 5. 31. 법률 제754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등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청의 방식) ①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 한다.

제22조(진실규명 조사 개시)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진실규명 조사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⑧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

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동행명령 등)** ①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 규명활동을 한다.
-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26조(진실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7조(진실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에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등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3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

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 기관은 당해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업무) 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 5 장 보 칙

제4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자격 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6 장 벌 칙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

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46조(형의 감경 등) ①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6.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와 공개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중 1인(서기관 1)은 국무조정실, 4인(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은 중앙인사위원회, 4인(교육행정사무관 1, 교육행정주사 3)은 교육인적자원부, 4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2)은 통일부, 1인(외무공무원 5등급 1)은 외교통상부, 5인(검찰수사서기관 1,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 검찰주사 2, 검찰주사보 1)은 법무부, 6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4, 행정주사보 1)은 국방부, 10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 행정주사 2, 편찬연구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1)은 행정자치부, 4인(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3)은 국가보훈처, 3인(수사사무관 1, 수사주사 2)은 국가정보원, 8인(경정 2, 경감 또는 경위 6)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

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정원 중 제15조제2항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006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6년 8월 인쇄

2006년 8월 발행

발행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0-728)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Tel : (대) 02) 3406-2500

Fax : (대) 02) 3406-2505

<http://www.jinsil.go.kr>

작성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쇄 : 산경기획

<비매품>

